|  |  |  |
| --- | --- | --- |
| **경외(境外)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 공고 [2011] 제1호  다국적 무역 인민폐결제 시범과 더불어 은행업 금융기관과 경내(境內)기구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 결제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공표, 실시한다.  중국인민은행  2011년 1월 6일  **제1조** 다국적 무역 인민폐결제 시범과 더불어 경내기구의 해외 인민폐 직접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함)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 결제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해외 직접투자라 함은 경내기구가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인민폐자금으로 설립, 인수합병, 지분참여 등 방식을 통해 해외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 통제권 또는 경영관리권 등의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경내기구라 함은 다국적 무역 인민폐결제 시범지역 내에 등록 등기한 비금융기업을 가리킨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전기비용이라 함은 경내기구가 해외에 프로젝트나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되는 비용을 가리킨다.  **제3조**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방법에 근거하여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시범업무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경내기구가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직접투자 관련 허가수속을 할 때 경내기구는 투자할 인민폐 금액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5조** 해외 직접투자 전기비용을 송금하거나 전기비용 해외송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경내기구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기비용의 송금 또는 해외 직접투자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1) 서면신청서  (2)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서류 및 사본, 또는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에 제출한 해외 직접투자 신청서류 사본  (3) 경내기구의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 등 사본.  경내기구 소재지 외환관리국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정보의 등록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전기비용 송금이 발생한 적이 있는 해외 직접투자인 경우, 경내기구는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30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6조** 경내기구는 이 방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기비용 송금수속을 하거나 또는 해외 직접투자 등록수속을 마친 후 은행에서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자금의 송금 또는 전기비용 인민폐자금의 송금수속을 할 수 있다.  은행은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신중성 감독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증서나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경내기구에 요구하고 열심히 심사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은행은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과 직접투자 외환관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7조** 은행은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에 제출한 경내기구의 신청서류와 경내기구의 조직기구코드 등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경내기구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 전기비용 송금을 처리할 수 있다. 경내기구가 송금할 수 있는 누적 전기비용은 원칙상 그가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에 신고한 중국측 투자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해외 인수합병 등 업무의 필요로 인해 전기비용이 15%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상황설명을 하고 아울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은행은 《인민폐 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령 [2003] 제5호로 반포) 등 규정에 따라 경내기구의 인민폐 은행결제계좌를 통해 그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자금을 결제하며, 아울러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인민폐자금 다국적 수불정보를 송부한다.  **제9조**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 관련 업무에 외환자금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외기구와 은행은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 외환자금의 송금 또는 수금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외환자금의 송금 또는 수금수속을 처리할 때 은행은 직접투자 외환관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무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적격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은행에서 해외기구의 해외 직접투자에 송금처리를 하는 인민폐 자금과 외환자금의 합계는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가 허가한 해외 직접투자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경내기구에서 해외에 송금한 인민폐 전기비용은 그 해외 직접투자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 은행은 경내기구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를 송금할 때 이미 송금한 인민폐 전기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은행은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인민폐 전기비용 다국적 수불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11조** 인민폐 전기비용을 송금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외기구는 나머지 자금을 경내의 원 인민폐 송금계좌에 송환해야 한다. 자금송환을 거절하는 경우 은행은 소재지 인민은행에 이를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12조** 경내기구가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은 인민폐로 경내에 송환할 수 있다. 은행은 경내기구가 제출한 해외투자기업 이사회의 이익처분 결의서 등 서류를 심사한 후 당해 해외기구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이익 입금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인민폐이익 수금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13조** 경내기구가 해외투자기업의 자본증가, 자본감소, 지분양도, 청산 등으로 인해 인민폐 수금이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인민폐자금의 송금 또는 수금 수속을 할 수 있다. 상기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은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인민폐 다국적 수불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14조** 이미 등기한 해외기업이 명칭, 경영기간, 합자 합작파트너 및 합자 합작방식 등 기본정보가 변경되거나 또는 자본증가, 자본감소, 지분양도 및 치환, 합병 또는 분립, 청산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내기구는 해당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변경상황을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내기구의 해외투자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인민폐 대출을 할 수 있다. 은행이 해외지점 또는 해외 대리은행을 통해 인민폐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지점에 인민폐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대리은행에 인민폐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며, 아울러 15일 이내에 소재지 인민은행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상기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은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인민폐 다국적 수불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16조**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과 경내기구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신고를 해야 한다.  **제17조** 은행은 정보 송부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며,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각종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송부해야 한다.  **제18조** 은행은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과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와 반테러융자 의무를 절실하게 이행하여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돈세탁, 테러융자 등 불법 범죄활동을 예방해야 한다. 은행은 경내기구의 해외 직접투자 목적지의 돈세탁 방지와 반테러 융자 정보를 수집하여 해외 직접투자 목적지에 대한 돈세탁과 테러융자 리스크를 평가함과 아울러 적절한 리스크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과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와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하여 사후 감독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 업무활동을 효율적으로 감독 관리한다.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은 날마다 직접투자 외환관리정보시스템에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를 송부하며, 직접투자 외환관리정보시스템은 날마다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환 다국적 수불정보를 송부한다.  **제20조**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과 회동하여 은행, 경내기구의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 업무활동에 대한 현장검사와 비현장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거래의 진실성 심사, 정보송부, 돈세탁 방지 등 직책을 절실하게 수행하도록 은행을 독촉하고 경내기구가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도록 감독한다.  **제21조** 은행, 경내기구가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과 회동하여 법에 따라 통보 비판하거나 처벌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은행, 경내기구의 다국적 인민폐업무를 금지시킬 수 있다.  **제22조** 은행이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신중성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관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돈세탁 방지, 반테러 융자 또는 인민폐 은행결제계좌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경내 금융기관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업무 관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유관 감독관리부서가 경내 금융기관의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이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반포한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 **境外直接投资人民币结算试点**  **管理办法**  中国人民银行公告〔2011〕第1号  为配合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便利银行业金融机构和境内机构开展境外直接投资人民币结算业务，中国人民银行制定了《境外直接投资人民币结算试点管理办法》，现予公布实施。  中国人民银行  二〇一一年一月六日  **第一条** 为配合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便利境内机构以人民币开展境外直接投资，规范银行业金融机构（以下简称银行）办理境外直接投资人民币结算业务，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境外直接投资是指境内机构经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核准，使用人民币资金通过设立、并购、参股等方式在境外设立或取得企业或项目全部或部分所有权、控制权或经营管理权等权益的行为。  本办法所称境内机构是指在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地区内登记注册的非金融企业。本办法所称前期费用是指境内机构在境外设立项目或企业前，需要向境外支付的与境外直接投资有关的费用。  **第三条** 中国人民银行和国家外汇管理局根据本办法对境外直接投资人民币结算试点实施管理。  **第四条** 境内机构办理人民币境外直接投资应当获得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的核准。在办理有关境外直接投资核准时，境内机构应当明确拟用人民币投资的金额。  **第五条** 境外直接投资前期费用汇出或未发生过前期费用汇出的境外直接投资，境内机构应当向所在地外汇局递交  以下材料，办理前期费用汇出或境外直接投资登记手续。  （一）书面申请书；  （二）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的核准文件及其复印件或向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提交的境外直接投资申请文件复印件；  （三）境内机构的营业执照、组织机构代码证等复印件。  境内机构所在地外汇局应当在收到相关申请材料之日起3天内完成相关信息登记手续。  发生过前期费用汇出的境外直接投资，境内机构应当在获得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核准的30天内向所在地外汇局报送有关信息。  **第六条** 境内机构按照本办法第五条第一款办理前期费用汇出或境外直接投资登记手续后，可以到银行办理境外直接投资人民币资金汇出或前期费用人民币资金汇出。  银行在办理境外直接投资人民币结算业务时，应当根据有关审慎监管规定，要求境内机构提交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的核准证书或文件等相关材料，并认真审核。在审核过程中，银行可登入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和直接投资外汇管理信息系统查询有关信息。  **第七条** 审核境内机构向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提交的申请文件和境内机构的组织机构代码证等相关材料后，银行可以为境内机构办理境外直接投资人民币前期费用汇出。境内机构累计汇出的前期费用原则上不得超过其向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申报的中方投资总额的15%。如确因境外并购等业务需要，前期费用超过15%的，应当向所在地外汇局说明并提交相关证明材料。  **第八条** 银行应当按照《人民币银行结算账户管理办法》（中国人民银行令〔2003〕第5号发布）等规定，通过境内机构的人民币银行结算账户为其办理境外直接投资人民币资金的结算，并向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报送有关人民币资金跨境收付信息。  **第九条** 人民币境外直接投资相关业务需要同时使用外汇资金的，境内机构和银行应当按照外汇管理相关规定，办理境外直接投资外汇资金汇出入手续。在办理外汇资金汇出入手续时，银行应当登入直接投资外汇管理信息系统进行业务审核，确保相关业务的合规性。  **第十条** 银行为境内机构办理的境外直接投资汇出的人民币资金和外汇资金之和，不得超过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核准的境外直接投资总额。  境内机构已经汇出境外的人民币前期费用，应当列入其境外直接投资总额。银行在为该境内机构办理境外直接投资人民币资金汇出时，应当扣减已汇出的人民币前期费用金额。银行应当向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报送人民币前期费用跨境支付信息。  **第十一条** 自汇出人民币前期费用之日起6个月内仍未获得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核准的，境内机构应当将剩余资金调回原汇出资金的境内人民币账户。银行应当督促境内机构将剩余资金调回原汇出资金的境内人民币账户。对拒不调回的，银行应当向所在地人民银行备案。  **第十二条** 境内机构可以将其所得的境外直接投资利润以人民币汇回境内。经审核境内机构提交的境外投资企业董事会利润处置决议等材料，银行可以为该境内机构办理境外直接投资人民币利润入账手续，并应当向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报送人民币利润汇回信息。  **第十三条** 境内机构因境外投资企业增资、减资、转股、清算等人民币收支，可以凭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的核准文件到银行直接办理人民币资金汇出入手续。在办理上述业务时，银行应当向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报送有关人民币跨境收付信息。  **第十四条** 已登记境外企业发生名称、经营期限、合资合作伙伴及合资合作方式等基本信息变更，或发生增资、减资、股权转让或置换、合并或分立清算等情况，境内机构应当在发生之日起30天内将上述变更情况报送所在地外汇局。  **第十五条** 银行可以按照有关规定向境内机构在境外投资的企业或项目发放人民币贷款。通过本银行的境外分行或境外代理银行发放人民币贷款的，银行可以向其境外分行调拨人民币资金或向境外代理银行融出人民币资金，并在15天内向所在地人民银行备案。在办理上述业务时，银行应当向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报送有关人民币跨境收付信息。  **第十六条** 在办理境外直接投资人民币结算业务时，银行和境内机构应当按照《国际收支统计申报办法》等有关规定办理国际收支申报。  **第十七条** 银行应当认真履行信息报送义务，及时、准确、完整地向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报送与境外直接投资相关的各类人民币跨境收付信息。  **第十八条** 银行在办理境外直接投资人民币结算业务时，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和中国人民银行的有关规定,切实履行反洗钱和反恐融资义务，预防利用人民币境外直接投资进行洗钱、恐怖融资等违法犯罪活动。银行应当收集境内机构境外直接投资目的地的反洗钱和反恐融资信息，评估境外直接投资目的地的洗钱和恐怖融资风险，并采取适当的风险管理措施。  **第十九条** 中国人民银行与国家外汇管理局、境外直接投资主管部门建立信息共享机制，加大事后监督检查力度，有效监管人民币境外直接投资业务活动。  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每日向直接投资外汇管理信息系统传输境外直接投资相关的人民币跨境收付信息，直接投资外汇管理信息系统每日向人民币跨境收付信息管理系统传输境外直接投资相关的外汇跨境收付信息。  **第二十条** 中国人民银行会同国家外汇管理局对银行、境内机构的人民币境外直接投资业务活动进行现场检查和非现场检查，督促银行切实履行交易真实性审核、信息报送、反洗钱等职责，监督境内机构依法开展业务活动。  **第二十一条** 银行、境内机构违反本办法有关规定的，中国人民银行会同国家外汇管理局可以依法进行通报批评或处罚；情节严重的，可以禁止银行、境内机构继续开展跨境人民币业务。  **第二十二条** 银行在办理境外直接投资人民币结算业务时违反有关审慎监管规定的，由有关部门依法进行处罚；违反有关反洗钱、反恐融资和人民币银行结算账户管理规定的，由中国人民银行依法进行处罚。  **第二十三条** 境内金融机构的境外直接投资人民币结算业务管理，参照本办法执行。相关监管部门对境内金融机构人民币境外直接投资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二十四条** 本办法由中国人民银行负责解释。  **第二十五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此前颁布的有关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按照本办法执行。 |